

# 정 관

사단법인 위액트

# 사단법인 위액트 정관

2021. 6. 13. 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위액트"(이하 "본법인"라 한다)라 한다.

### 제2조(소재지)

본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58, 퍼스트코리아 제8층 제831호'에 둔다.

### 제3조(목적)

본법인은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며 방치되거나 학대를 받으며 살아가는 개와 개농장에서 위험에 처한 개들을 구조하여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동물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본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방치 및 학대견 구조사업
2. 구조견들의 국내 및 해외입양을 위한 지원사업
3. 구조견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교육활동
4. 관련 단체와의 정보교류, 동물복지 및 동물권을 위한 제반활동
5. 기타 본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원

### 제5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 ① 본법인의 회원은 본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② 본법인의 회원구분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하고, 그 상세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특별회원은 총회

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법인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①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 시 기납부한 회비를 포함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 ② 회원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시킬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정관 제7조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3. 법인의 명예나 위상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4.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때

### 제9조(회원의 상벌)

- ① 본법인의 회원으로서 본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본법인의 회원으로서 본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3장 임원

###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10인 이내(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이내

### 제11조(임원의 선임)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제12조(임원의 선임 제한)

-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②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 제14조(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5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6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본법인을 대표하고 본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4장 총회

###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9조(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1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수나

306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 (재산)**

- ① 본 법인의 재산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및 동산으로 한다.
- ②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 1호]과 같다.
-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④ 법인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 때도 증여 교환을 포함)하고자 할 때는 제42조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⑤ 법인의 기본재산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한 경우, 법인은 그 수익을 파악하여 운영재산으로 분류하고, 이를 [별지 1호]에 기재하여 총회 시 보고한다.

### 제31조(재원)

①본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회비
2. 보조금 및 후원금
3. 찬조금 및 특별회비
4. 사업수입금
5. 기타 수입금

②본법인은 전항에서 정한 재원(수입)이 발생한 경우, 국내외에 존재하는 유기건을 보호하는 등의 공익을 위하여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맞게끔 사용하여야 한다.

③본법인은 제1항에서 정한 재원(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2조(회계연도)

본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3조(예산편성)

본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34조(결산)

본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36조(회계의 공개)

- ① 본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 제3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7장 사무부서

### 제38조(사무국)

-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8장 공고방법

### 제39조(공고방법)

총회 및 이사회회의 의결사항 또는 총회 및 이사회회의 의결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은 7일 이상 본 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제40조(지정기부금의 공고)

본회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결산 종료 후 3월말까지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제9장 보칙

### 제41조(법인해산)

- ① 본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또는 공익법인)에게 귀속한다.

### 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21년 06월 13일